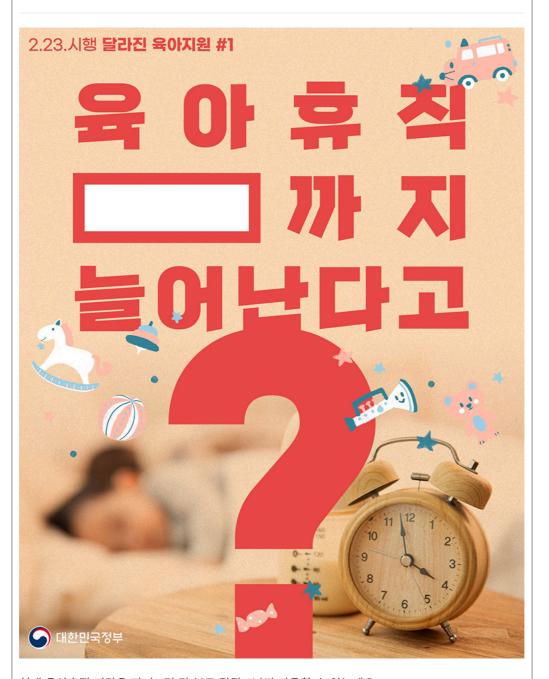


육아휴직 3년까지 늘어난다고?

2025.02.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



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,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1년이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,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을 개정했어요. (남녀고용평등법, 2.23.시행)

■ 육아휴직 사용기간(기존) 부모 각각 1년

(개편) 부모 각각 1년 6개월

-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
-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
- 육아휴직 분할 사용(기존) 3번에 나눠 사용 (개편) 4번에 나눠 사용
- 육아휴직 사후지급금(기존) 급여액의 25%는 복귀 후 지급

인쇄하기 닫기